

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6-503호

노원구 공릉동 503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공람공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503번지 일대 「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를 공람합니다.

2016년 6월 16일

노 원 구 청 장

가. 공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

나. 공람장소 : 노원구청 주택사업과(☎ 2116-3914)

공릉1동 주민센터(☎ 2116-2512)

다. 공람공고 : 구보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nowon.go.kr> → 고시·공고)

라. 공람의견 제출장소: 노원구 주택사업과(☎ 2116-3914)

마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

1. 정비구역 지정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노원구 공릉동 뚝가비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	노원구 공릉동 503번지 일원	-	증)54,783.0	54,783.0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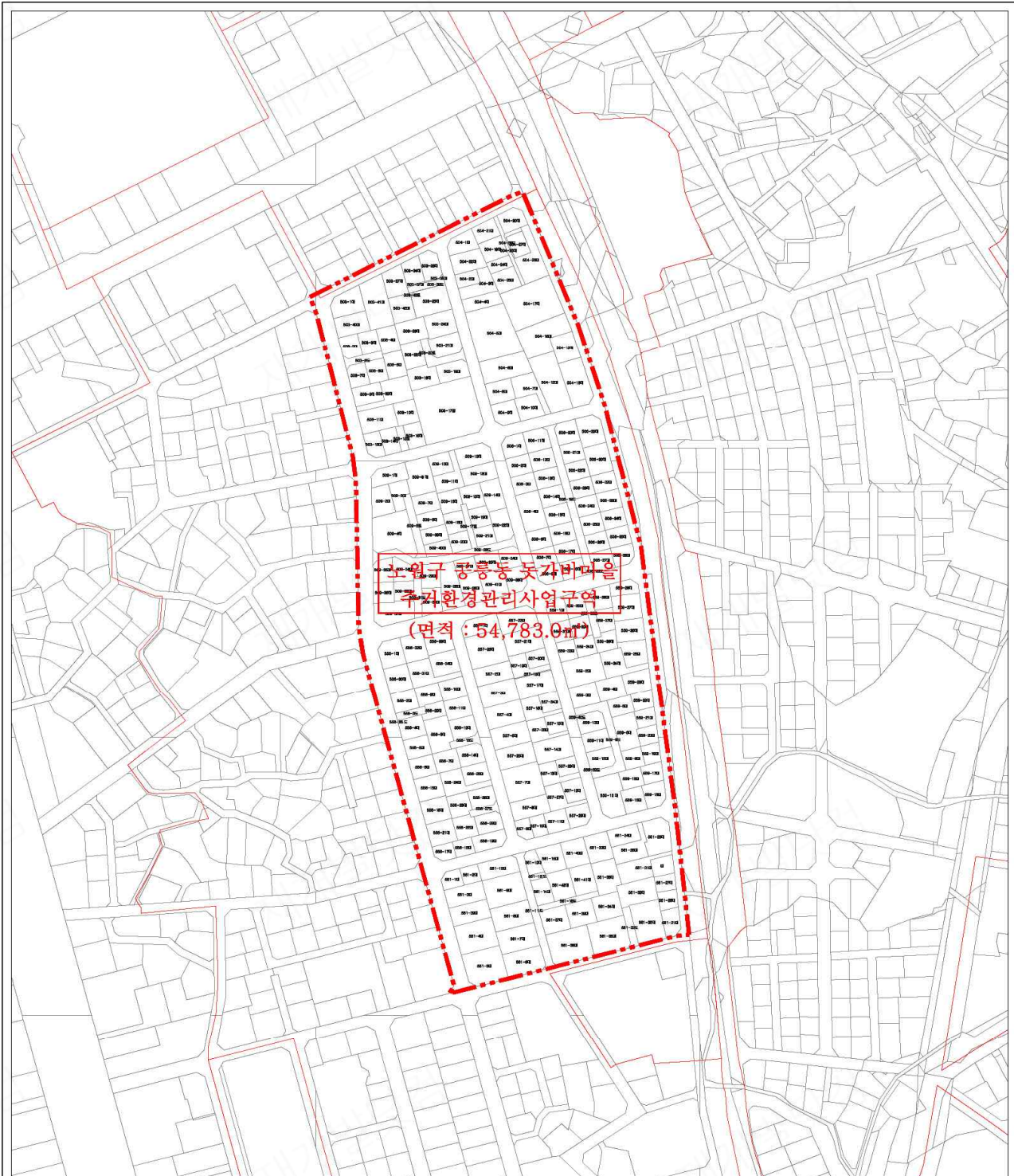
2. 정비계획(안) : 붙임참조

바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

사. 본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원구 주택사업과(☎ 2116-39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주거환경관리구역 결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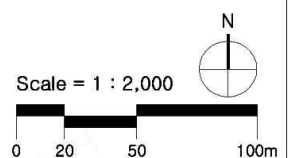


노원구 공릉동
뚝가비마을
주거환경관리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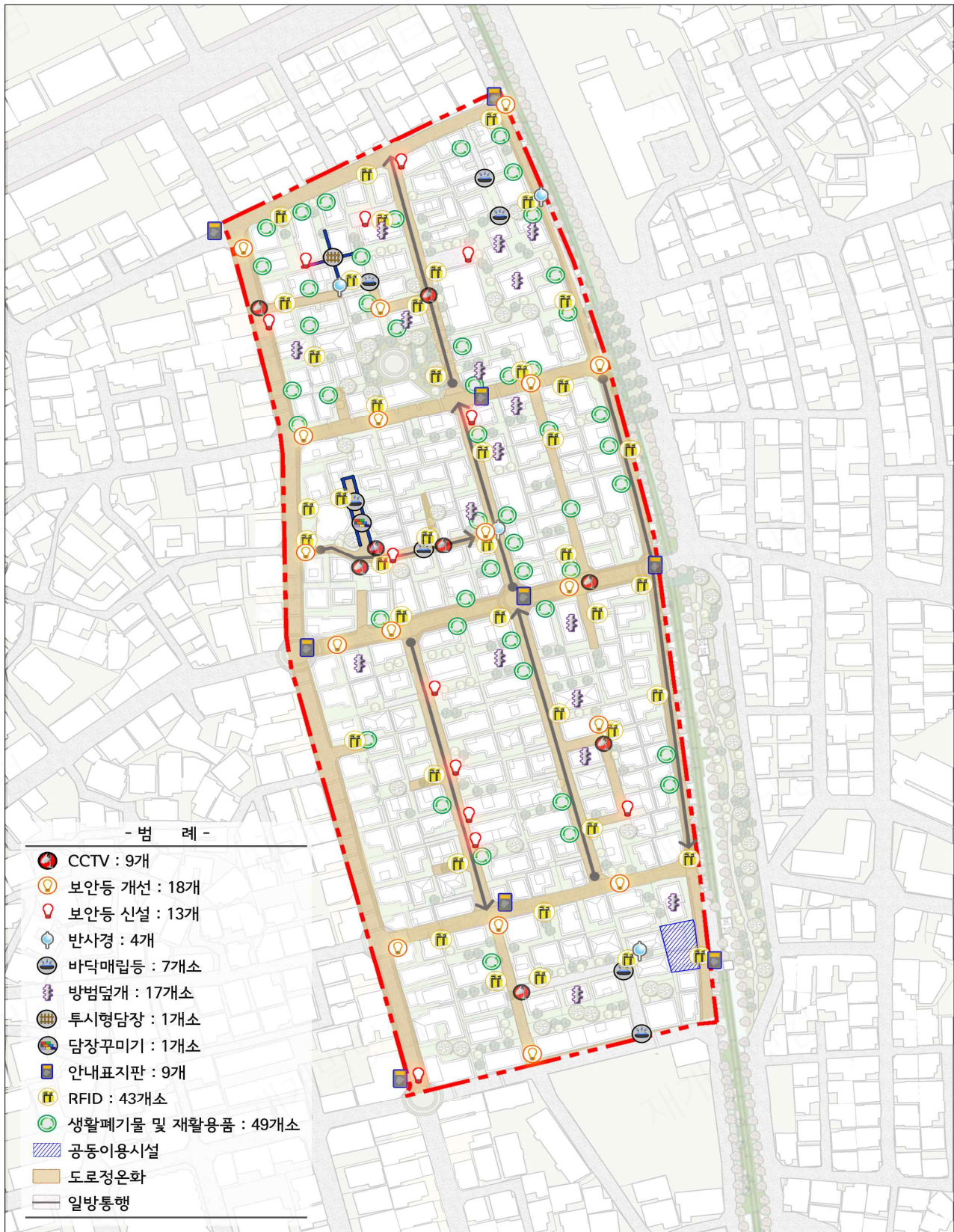
주거환경관리구역 결정도

■ 범 례

-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
- 지적



붙임 2. 주거환경관리사업 종합계획(안)



※ 시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견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